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21년06월15일
(11) 등록번호 10-2265321
(24) 등록일자 2021년06월09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Q 50/18 (2012.01) G06Q 10/06 (2012.01)
G06Q 30/06 (2012.01) G06Q 30/08 (2012.01)
G06Q 50/26 (2012.01)
(52) CPC특허분류
G06Q 50/18 (2013.01)
G06Q 10/063112 (2013.01)
(21) 출원번호 10-2019-0069082
(22) 출원일자 2019년06월12일
심사청구일자 2019년06월12일
(65) 공개번호 10-2020-0142186
(43) 공개일자 2020년12월2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2007762 A*
KR101950769 B1*
KR1020170042868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이준호
경기도 평택시 용죽1로 65, 105동 1904호 (용이동, 비전아이파크평택)
(72) 발명자
이준호
경기도 평택시 용죽1로 65, 105동 1904호 (용이동, 비전아이파크평택)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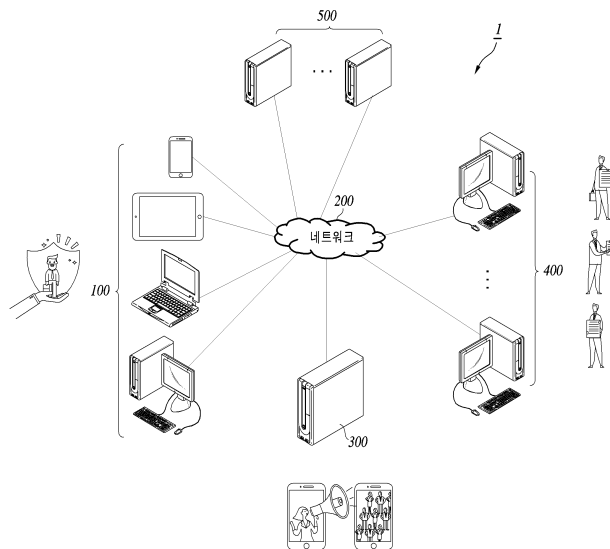
심사관 : 장경태

(54) 발명의 명칭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

(57) 요약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되며, 업무 내용 및 업무 특성을 포함하는 의뢰 데이터를 등록하고,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수임 수수료에 기반하여 수임인을 선택하는 의뢰인 단말,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자격증을 등록하여 자격확인을 요청하고, 자격확인이 완료된 경우 등록된 의뢰 데이터 내의 업무 특성 (뒷면에 계속)

대표도 - 도1



에 기반하여 의뢰 데이터를 수신하고, 의뢰 데이터를 수입하여 처리할 수입수수료 및 수입조건 데이터를 의뢰인 단말로 전송하는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 및 의뢰인 단말의 의뢰 데이터를 등록받아 업무 특성에 따라 의뢰 데이터를 분류 및 업로드하는 업로드부, 업무 특성에 기 매핑되어 저장된 자격증의 종류를 등록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을 추출하는 추출부, 추출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로 의뢰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부,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로부터 수입수수료 및 수입조건 데이터를 등록받아 리스트업된 데이터를 의뢰인 단말로 전송하는 리스트업부, 의뢰인 단말에서 수입인인 자격자 단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된 자격자 단말로 수입인 선정 통지를 전송하는 통지부, 의뢰인 단말에서 수입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계약체결을 확정하고 의뢰인 단말 및 선정된 자격자 단말로 전송하는 확정부를 포함하는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한다.

(52) CPC특허분류

G06Q 30/0609 (2013.01)

G06Q 30/08 (2013.01)

G06Q 50/265 (2013.01)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업무 내용 및 업무 특성을 포함하는 의뢰 데이터를 등록하고,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수입 수수료에 기반하여 수입인을 선택하는 의뢰인 단말(100);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자격증을 등록하여 자격확인을 요청하고, 자격확인이 완료된 경우 상기 등록된 의뢰 데이터 내의 업무 특성에 기반하여 상기 의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의뢰 데이터를 수입하여 처리할 수입수수료 및 수입조건 데이터를 상기 의뢰인 단말(100)로 전송하는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 및

상기 의뢰인 단말(100)의 의뢰 데이터를 등록받아 업무 특성에 따라 의뢰 데이터를 분류 및 업로드하는 업로드부(310), 상기 업무 특성에 기 매핑되어 저장된 자격증의 종류를 등록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을 추출하는 추출부(320), 상기 추출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로 상기 의뢰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부(330),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로부터 수입수수료 및 수입조건 데이터를 등록받아 리스트업된 데이터를 상기 의뢰인 단말(100)로 전송하는 리스트업부(340), 상기 의뢰인 단말(100)에서 수입인인 자격자 단말(400)을 선정하는 경우, 상기 선정된 자격자 단말(400)로 수입인 선정 통지를 전송하는 통지부(350), 상기 의뢰인 단말(100)에서 상기 수입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계약체결을 확정하고 상기 의뢰인 단말(100) 및 선정된 자격자 단말(400)로 전송하는 확정부(360)를 포함하는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를 포함하고,

상기 업무 특성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자격증을 구분하는 식별자가 각각 태깅되어 매핑저장되며,

상기 업무 특성은, 업무 영역별 범무, 회계, 감정평가, 노무, 행정, 번호, 세무, 및 변리를 포함하는 속성이고,

상기 의뢰인 단말(100)은, 상기 의뢰 데이터를 등록할 때, 업무 중개 서비스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납부하며,

상기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로부터 가입신청을 수신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의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자격증을 증명하는 자격면허사본, 본인인증, 및 자격유지현황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을 등록받는 자격관리부(370);를 더 포함하고,

상기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상기 계약체결을 확정된 자격자 단말(400)의 업무처리에 대한 리뷰 및 평점을 상기 의뢰인 단말(100)로부터 수신하여 누적시키고, 상기 계약체결을 확정된 자격자 단말(400)로부터 상기 위임인 단말의 리뷰 및 평점을 수신하여 누적시키되, 상기 리뷰는 리뷰에 해당하는 텍스트로부터 대상에 담겨있는 감정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감정 분석을 수행하여 누적시키는 평점관리부(380);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임인 및 수입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격관리부(370)는,

상기 자격유지현황 데이터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로부터 수신한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자격증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협회 서버(500)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을 입력값으로 자격유지현황 데이터를 피드백받아 비교한 후 자격유지현황 데이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임인 및 수입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7

삭제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위임인 및 수입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위임인과 수입인 간을 중개하여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배경 기술

[0002] 오늘날 사회환경의 급격하고 다양한 발전으로 인하여 사이버범죄, 환경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와 함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는 그 범위를 점점 확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전공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은 법률정보 이용 및 관련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웹기반 법률정보서비스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한 노력이 존재해왔는데,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정부주도로 개발하여 다년간 실제 서비스 구현을 수행한 것이 그 예이다.

[0003] 이때, 법률소비자와 법률전문가를 매칭시키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행기술인 한국공개특허 제2016-0051930호(2016년05월12일 공개)에는, 법률소비자가 매칭 서버로부터 법률전문가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는 법률전문가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홍보기업의 서비스 정보가 매칭 서버를 통해 상기 법률전문가 검색 애플리케이션으로 법률 무료 자문 서비스 쿠폰이 발행되고, 법률전문가의 연회비가 매칭 서버에서 제공하는 중개 사이트의 계좌를 통해 이체되며 회원정보가 서버를 통하여 저장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0004] 다만, 이러한 법률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품질인식도는 다소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는 해당 법률정보서비스의 이용자가 원하는 요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후속 수입의 확률이 거의 없으므로 덤핑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품질을 평가하는 실제 이용자들의 품질 잣대에 대한 이해도 또한 부족하여 추가적인 고찰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직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품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웹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칭을 제공할 때 특정 영향요소보다 차별적인 집중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5]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법률 자격증을 보유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받아 검증하고,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의뢰인의 업무요청이 존재하는 경우, 기 설정된 중개 수수료가 결제된 후 업무특성에 대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소지자를 추출하고, 업무내용을 전달하여 수입료 및 수입조건을 수신하여 리스트업하고, 리스트업된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의뢰인이 선택하여 양당사자가 위임 및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뢰인 및 자격증 소지자의 상호간의 리뷰 및 평점 부여로 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서로에게 피드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인 및 수입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

할 수 있다. 다만, 본 실시예가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된 바와 같은 기술적 과제로 한정되지 않으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6]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업무 내용 및 업무 특성을 포함하는 의뢰 데이터를 등록하고,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수입 수수료에 기반하여 수입인을 선택하는 의뢰인 단말,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자격증을 등록하여 자격확인을 요청하고, 자격확인이 완료된 경우 등록된 의뢰 데이터 내의 업무 특성에 기반하여 의뢰 데이터를 수신하고, 의뢰 데이터를 수입하여 처리할 수입수수료 및 수입 조건 데이터를 의뢰인 단말로 전송하는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 및 의뢰인 단말의 의뢰 데이터를 등록받아 업무 특성에 따라 의뢰 데이터를 분류 및 업로드하는 업로드부, 업무 특성에 기 매핑되어 저장된 자격증의 종류를 등록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을 추출하는 추출부, 추출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로 의뢰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부,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로부터 수입수수료 및 수입조건 데이터를 등록받아 리스트업된 데이터를 의뢰인 단말로 전송하는 리스트업부, 의뢰인 단말에서 수입인인 자격자 단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된 자격자 단말로 수입인 선정 통지를 전송하는 통지부, 의뢰인 단말에서 수입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계약체결을 확정하고 의뢰인 단말 및 선정된 자격자 단말로 전송하는 확정부를 포함하는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0007] 진술한 본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 중 어느 하나에 의하면, 법률 자격증을 보유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받아 검증하고,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의뢰인의 업무요청이 존재하는 경우, 기 설정된 중개 수수료가 결제된 후 업무특성에 대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소지자를 추출하고, 업무내용을 전달하여 수입료 및 수입조건을 수신하여 리스트업하고, 리스트업된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의뢰인이 선택하여 양당사자가 위임 및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뢰인 및 자격증 소지자의 상호간의 리뷰 및 평점 부여로 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서로에게 피드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감성품질을 높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8]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임인 및 수입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시스템에 포함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임인 및 수입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가 구현된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위임인 및 수입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포함된 각 구성들 상호 간에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임인 및 수입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9]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0010]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소자를 사이에 두고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0011] 명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용어 "약", "실질적으로" 등은 언급된 의미에 고유한 제조 및 물질 허용오차가 제시될 때 그 수치에서 또는 그 수치에 근접한 의미로 사용되고,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하거나 절대적인 수치가 언급된 개시 내용을 비양심적인 침해자가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발명의 명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용어 "~(하는) 단계" 또는 "~의 단계"는 "~를 위한 단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 [0012] 본 명세서에 있어서 '부(部)'란,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유닛(unit),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유닛, 양방을 이용하여 실현되는 유닛을 포함한다. 또한, 1개의 유닛이 2개 이상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실현되어도 되고, 2개 이상의 유닛이 1개의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어도 된다.
- [0013] 본 명세서에 있어서 단말, 장치 또는 디바이스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는 해당 단말, 장치 또는 디바이스와 연결된 서버에서 대신 수행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버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도 해당 서버와 연결된 단말, 장치 또는 디바이스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 [0014] 본 명세서에서 있어서, 단말과 매핑(Mapping) 또는 매칭(Matching)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는, 단말의 식별 정보(Identifying Data)인 단말기의 고유번호나 개인의 식별정보를 매핑 또는 매칭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0015]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0016]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1)은,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 및 적어도 하나의 협회 서버(500)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도 1의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도 1을 통하여 본 발명이 한정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 [0017] 이때, 도 1의 각 구성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network, 200)를 통해 연결된다. 예를 들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은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 적어도 하나의 협회 서버(500)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은,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협회 서버(500)는,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와 연결될 수 있다.
- [0018] 여기서, 네트워크는, 복수의 단말 및 서버들과 같은 각각의 노드 상호 간에 정보 교환이 가능한 연결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일 예에는 RF,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네트워크, LTE(Long Term Evolution) 네트워크, 5GPP(5th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네트워크, WIMAX(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네트워크, 인터넷(Internet), LAN(Local Area Network), Wireless 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PAN(Personal Area Network), 블루투스(Bluetooth) 네트워크, NFC 네트워크, 위성 방송 네트워크, 아날로그 방송 네트워크,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네트워크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0019] 하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라는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되고, 적어도 하나의 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각 구성요소가 단수 또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고, 단수 또는 복수를 의미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각 구성요소가 단수 또는 복수로 구비되는 것은, 실시예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할 것이다.
- [0020]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은,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관련 웹 페이지, 앱 페이지,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업무요청을 수행하는 의뢰인의 단말일 수 있다. 이때, 업무요청은 법률 서비스 관련 처리를 의미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은, 업무요청을 할 때 업무내용과 업무특성을 등록하는 단말일 수 있다. 이때, 업무특성은, 법률 서비스를 카테고리로는 식별자일 수 있고, 예를 들어, 세무, 법무, 변리, 변호, 감정평가, 회계 등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은, 중개를 요청할 때 중개 수수료를 결제하는 단말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부터 리스트업된 자격자 데이터와, 자격자 단말(400)에서 등록한 수임조건 및 수수료를 함께 리스트업하는 단말일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은, 복수의 자격자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를 선택하는 단말일 수 있다. 또한,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은,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부터 자격자 단말(400)의 승낙의 통지를 수신하는 단말일 수 있고,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일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요청을 한 결과에 대하여 리뷰 및 평점을 피드백 데이터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 전송하는 단말일 수 있다.

[0021]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로 구현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은, 예를 들어,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무선 통신 장치로서, 네비게이션,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W-CDMA(W-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단말, 스마트폰(smartphone), 스마트 패드(smartpad), 타블렛 PC(Tablet PC)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핸드헬드(Handheld) 기반의 무선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0022]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웹 페이지, 앱 페이지,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버일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로부터 자격증을 등록하여 게재되도록 하는 서버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400)로부터 자격증을 수신한 후, 적어도 하나의 협회 서버(500)로 등록된 자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응답(Ack) 받은 데이터와 대조 및 진위여부를 판별함으로써 검증 여부를 거치는 서버일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의 종류에 대응하도록 카테고리를 생성하고, 카테고리의 하위분류로 전문분야의 태그를 더 부가하여 세분화하는 서버일 수 있다. 또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로부터 가능업무 분야를 등록받을 때, 해당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에 전문분야 및 자격분야 등의 태그를 태깅하여 저장하는 서버일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로부터 업무특성 및 업무내용을 수신하고, 중개 수수료가 결정되는 경우, 업무특성에 대응하는 자격증을 검색하고, 검색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격자 단말(400)을 필터링하여 추출하는 서버일 수 있다. 이때,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자격증 뿐만 아니라, 의뢰된 업무내용을 기반으로 키워드를 추출한 후, 추출된 키워드와 기 매핑되어 저장된 태그를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자격자 단말(400)을 재 필터링하는 서버일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1차 필터링된 리스트 또는 2차 필터링된 리스트를 의뢰인 단말(100)로 전송하고, 의뢰인 단말(100)에서 어느 하나 또는 복수의 자격자를 선택하는 경우, 이를 선택된 자격자 단말(400)로 전송함으로써 승낙의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는 서버일 수 있다. 여기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자격자 단말(400)로부터 승낙의 통지를 수신하는 경우, 이를 의뢰인 단말(100)로 전송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하도록 하는 서버일 수 있다. 또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계약체결 후 업무가 완료된 다음 의뢰인 단말(100) 및 자격자 단말(400)로 상호간의 평가 및 리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누적시키는 서버일 수 있다.

[0023] 여기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할 수 있다.

[0024]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은,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관련 웹 페이지, 앱 페이지,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자격증 소지자의 단말일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은,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 자격증 및 본인인증을 하여 자격자를 등록하는 단말일 수 있다. 또한,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은,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부터 의뢰인 단말(100)의 업무내용이 수신되는 경우, 수입료 및 수입조건 데이터를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 전송하는 단말일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은,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부터 의뢰인 단말(100)의 선택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 승낙 여부를 통지하는 단말일 수 있다. 또한,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은, 의뢰인 단말(100)에서 계약체결의사를 밝히는 경우, 수입료를 결제받고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단말일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은, 업무 프로세스가 종료된 후,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부터 리뷰 요청을 수신하는 단말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리뷰를 제공하는 단말일 수 있다.

- [0025]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로 구현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은, 예를 들어,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무선 통신 장치로서, 네비게이션,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W-CDMA(W-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단말, 스마트폰(smartphone), 스마트 패드(smartpad), 타블렛 PC(Tablet PC)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핸드헬드(Handheld) 기반의 무선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 [0026] 적어도 하나의 협회 서버(500)는,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관련 웹 페이지, 앱 페이지,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 자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일 수 있다.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협회 서버(500)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0027] 도 2는 도 1의 시스템에 포함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가 구현된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0028] 도 2를 참조하면,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업로드부(310), 추출부(320), 전송부(330), 리스트업부(340), 통지부(350), 확정부(360), 자격관리부(370) 및 평점관리부(380)를 포함할 수 있다.
- [002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나 연동되어 동작하는 다른 서버(미도시)가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 및 적어도 하나의 협회 서버(500)로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앱 페이지, 웹 페이지 등을 전송하는 경우,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 및 적어도 하나의 협회 서버(500)는,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앱 페이지, 웹 페이지 등을 설치하거나 열 수 있다. 또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이 적어도 하나의 의뢰인 단말(100),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 및 적어도 하나의 협회 서버(500)에서 구동될 수도 있다. 여기서, 웹 브라우저는 웹(WWW: world wide web)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로 서술된 하이퍼 텍스트를 받아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넷스케이프(Netscape), 익스플로러(Explorer), 크롬(chrome) 등을 포함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은 단말 상의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모바일 단말(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앱(app)을 포함한다.
- [0030] 도 2를 참조하면, 업로드부(310)는, 의뢰인 단말(100)의 의뢰 데이터를 등록받아 업무 특성에 따라 의뢰 데이터를 분류 및 업로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뢰인 단말(100)은, 업무 내용 및 업무 특성을 포함하는 의뢰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업무 특성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업무 내용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업무 특성을 추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률 자문 요청 데이터와, 이에 대응하는 법률 자문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수집되는 경우, 어떠한 종류의 키워드가 포함된 자문 요청에 어떠한 전문가가 일을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학습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오류율을 줄이면서 자동으로 업무 내용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에 대응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 특성(처리분야, 이에 대응하는 자격증)을 추출할 수 있다. 만약, 같은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그 전문분야가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뢰인은 어떠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대한 태그를 자격자 단말(400)에서 태깅해두었으므로,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태그와 키워드 간의 연관관계를 학습하도록 하고, 학습 결과를 반영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 의뢰인이 업무 특성을 지정하지 않고도 업무 내용만으로 수임인의 리스트를 추출해낼 수 있게 된다. 물론, 상술한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상술한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 [0031] 추출부(320)는, 업무 특성에 기 매핑되어 저장된 자격증의 종류를 등록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을 추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자격자 단말(400)은,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자격증을 등록하여 자격확인을 요청하여 등록된 경우, 자격확인이 완료된 경우 등록된 의뢰 데이터 내의 업무 특성에 기반하여 의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 [0032] 전송부(330)는, 추출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로 의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업무 특성과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자격증을 구분하는 식별자가 각각 태깅되어 매핑저장되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다. 그리고, 업무 특성은, 업무 영역별 법무, 회계, 감정평가, 노무, 행정, 변호, 세무, 및 변리를 포함하는 속성일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자격을 대표하는 단어들은 상위 카테고리이고, 전문분야를 나타내는 태그들은 하위 카테고리를 이룰 수 있으며, 각 카테고리의 구조는 이진트리 구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를 낼 경우가 존재하여 변리사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변리사도 자신의 전공분야에 따라 수임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기 때문에, "변리사"라는 자격을 등록하여 상위 카테고리를 만족시키지만, 이와 동시에 "기계"라는 하위 카테고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분야를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격자의 "자격"이 상위 노드, "전문 분야"가 하위 노드를 이룰 수 있다.
- [0033] 리스트업부(340)는,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로부터 수임수수료 및 수임조건 데이터를 등록받아 리스트업된 데이터를 의뢰인 단말(100)로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의뢰인 단말(100)은, 의뢰 데이터를 등록할 때, 업무 중개 서비스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물론, 무료로 중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 [0034] 통지부(350)는, 의뢰인 단말(100)에서 수임인인 자격자 단말(400)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된 자격자 단말(400)로 수임인 선정 통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때, 통지부(350)에서 승낙의 통지를 전송하기 이전에, 의뢰인이 질의응답을 통하여 간단한 질의나 궁금함은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플랫폼을 더 제공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규정은 요건규정과 효과규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예를 들어, A,B,C의 조건을 만족하면 D의 효과를 가진다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는, $y=f(x)$ 와 같은 함수와도 유사한데, $f(A,B,C)=D$ 의 알고리즘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은 학습될 수 있고, 법률 조항 코퍼스(Corpus)에서 사용자(의뢰인)가 채팅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자연어로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가장 유사한 조항을 보여주거나, 요건을 입력하면 효과를 보여주는 형식의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 단말(100)은 자신이 무엇을 물어봐야하는지, 어떻게 사건을 정리하여 자격자에게 설명해야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게 된다. 우선, 통지부(350)는 의뢰인 단말(100)에서 입력된 텍스트에 대하여 띄어쓰기 검사를 시행하고 전처리를 수행하며, 처리가 끝난 규정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고 명사만 추출한다. 통지부(350)는 추출된 명사 중 연속된 명사에 대해서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복합 명사와 띄어쓰기가 포함되지 않은 복합 명사를 추가해 단어 사전을 구성하고, 각 법률규정에 포함된 명사를 이용하여 규정 가중치 벡터를 만들고, 크기를 맞추기 위해 단위 벡터로 정규화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통지부(350)는 단어 정보와 조항과 가중치 벡터로 이루어진 조항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면 띄어쓰기 검사와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고 규정과 같이 연속된 명사에 대해서 복합 명사를 추가해준다. 통지부(350)는 질의에 포함된 명사와 복합 명사를 이용하여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고, 사용자의 질의와 조항의 제목, 본문 단위로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여 순위화 한 후 가장 높은 순위로 추출된 조항을 사용자에게 답변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035] 이에 덧붙여서, 통지부(350)는 전문용어 검색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질의벡터 보정을 더 수행할 수 있다. 즉, 일반 문서와 다르게 규정에는 한자나 복합 명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형태소 분석의 오인식 문제를 발생시킨다. 붙어 있는 복합 명사를 띄어 쓰게 되면 형태소 분석의 오류는 줄어들지만, 복합 명사의 본래 의미는 해체되어 검색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통지부(350)는 형태소 분석 오류는 줄이고 복합 명사의 중요도는 높여주기 위해 문장에 포함된 명사와 연속된 명사로 만든 복합 명사를 문장의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법률 조항별 가중치 벡터는 빈도수를 바탕으로 한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이용할 수 있고,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로 정규화 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의 특성상 제목에 주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을 구분하여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질의에 포함된 복합 명사의 경우 IDF가 아닌 합성된 명사의 평균 DF의 역수를 가지 수 있다. 예를 들어, 질의가 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세요의 경우 질의 내 명사는 간접비, 산정, 기준 이고 연속된 명사에 대한 복합 명사 간접비산정이 이 질의 벡터에 추가되는 방식일 수 있다. 물론, 상술한 방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 [0036] 확정부(360)는, 의뢰인 단말(100)에서 수임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계약체결을 확정하고 의뢰인 단말(100) 및 선정된 자격자 단말(40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계약체결을 한다고 통지 및 승낙을 한 후 하지 않는 의뢰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부(360)는 에스스로 제도 또는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을 이용할 수 있다.
- [0037] 자격관리부(370)는,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로부터 가입신청을 수신하고,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의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자격증을 증명하는 자격면허사본, 본인인증, 및 자격유지현황 데이터를 수신하여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을 등록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격관리부(370)는, 자격유지현황 데이터를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로부터 수신한 경우,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자격증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협회 서버(500)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을 입력값으로 자격유지현황 데이터를 피드백받아 비교한 후 자격유지현황 데이터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0038] 평점관리부(380)는, 계약체결을 확정된 자격자 단말(400)의 업무처리에 대한 리뷰 및 평점을 의뢰인 단말(100)로부터 수신하여 누적시키고, 계약체결을 확정된 자격자 단말(400)로부터 위임인 단말의 리뷰 및 평점을 수신하여 누적시킬 수 있다. 이때, 평점관리부(380)는, 감정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단순한 리뷰 또는 평점 평가 방법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감정 분석이란 대상 주로 텍스트로부터 대상에 담겨있는 감정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말하며,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하위 분야이기도 하고, 오피니언 마이닝 이라고도(Opinion Mining)을 포함한다. 이때, 감정 분석의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Data Acquisition)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분석 대상이 될 데이터와 학습을 위한 데이터(Training Data)가 필요하고, 텍스트 전처리(Text Pre-Processing) 과정을 진행하여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가 되도록 한다. 우선, 수집된 로우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학습에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이즈를 없애고 학습에 필요한 단어만을 남겨놓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문장을 단어 단위로 쪼개고(Tokenize), 접속사 관사 동사 등 감정과 관계 없는 단어를 삭제(Remove Stopword)하고 단어를 원형으로 고치는(Lemmatize)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감정 분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 학습 기반의 방법과 사전 기반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이때, 기계 학습 기반의 방법은 사전에 없는 단어나 특정 도메인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또한 분석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와 법률용어가 다수 포함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 분석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계 학습 기반에서는 교차 검증(Cross-Validation)이 이용될 수 있으며, 평가의 척도로는 정밀도(Accuracy), 정확도(Precision), 재현율(Recall), 및 정확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인 F1 스코어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0039] 덧붙여서, 감정 분석 모델의 분류 결과에 보정을 수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분류된 텍스트라고 할지라도 30% 긍정적인 리뷰보다는 90% 긍정적인 리뷰가 더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자의 리뷰에 더 높은 보정값을 부여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피드백의 유형(Type)을 정의하고 리뷰를 분류하는 방법, 학습 알고리즘인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이용하여 감정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입력변수로 형용사, 4품사에 대한 문서빈도정보, TF-IDF, 획득량 카이제곱 통계량을 각각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할 수도 있다. 물론, 상술한 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0040]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업무 특성을 업무 내용으로부터 자동추출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기존 법률 자문 요청 데이터와 법률 자문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Raw Data)로 병렬 및 분산하여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저장된 로우 데이터 내에 포함된 비정형(Unstructured) 데이터, 정형(Structured) 데이터 및 반정형 데이터(Semi-structured)를 정제하고, 메타 데이터로 분류를 포함한 전처리를 실시할 수 있고, 전처리된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포함하는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분석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출력할 수 있다. 이때, 데이터 마이닝은, 전처리된 데이터 간의 내재된 관계를 탐색하여 클래스가 알려진 훈련 데이터 셋을 학습시켜 새로운 데이터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분류(Classification) 또는 클래스 정보 없이 유사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짓는 군집화(Clustering)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마이닝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수집 및 저장되는 빅데이터의 종류나 이후에 요청될 질의(Query)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마이닝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망 딥러닝이나 기계학습 등으로 검증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0041] 이때, 인공 신경망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구조가 이용될 수 있는데, CNN은 컨볼루션 층을 이용한 네트워크 구조로 이미지 처리에 적합하며,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이미지 내의 특징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비/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다.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해 방대한 텍스트 문치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고,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파악하며, 텍스트가 가진 카테고리 찾아내거나 단순한 정보 검색 그 이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업무 중개 서비스에서는, 질의로 입력되는 식별자나 자연어를 분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정보를 발굴해

내기 위해 대용량 언어자원과 통계적, 규칙적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객체를 합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의 그룹을 발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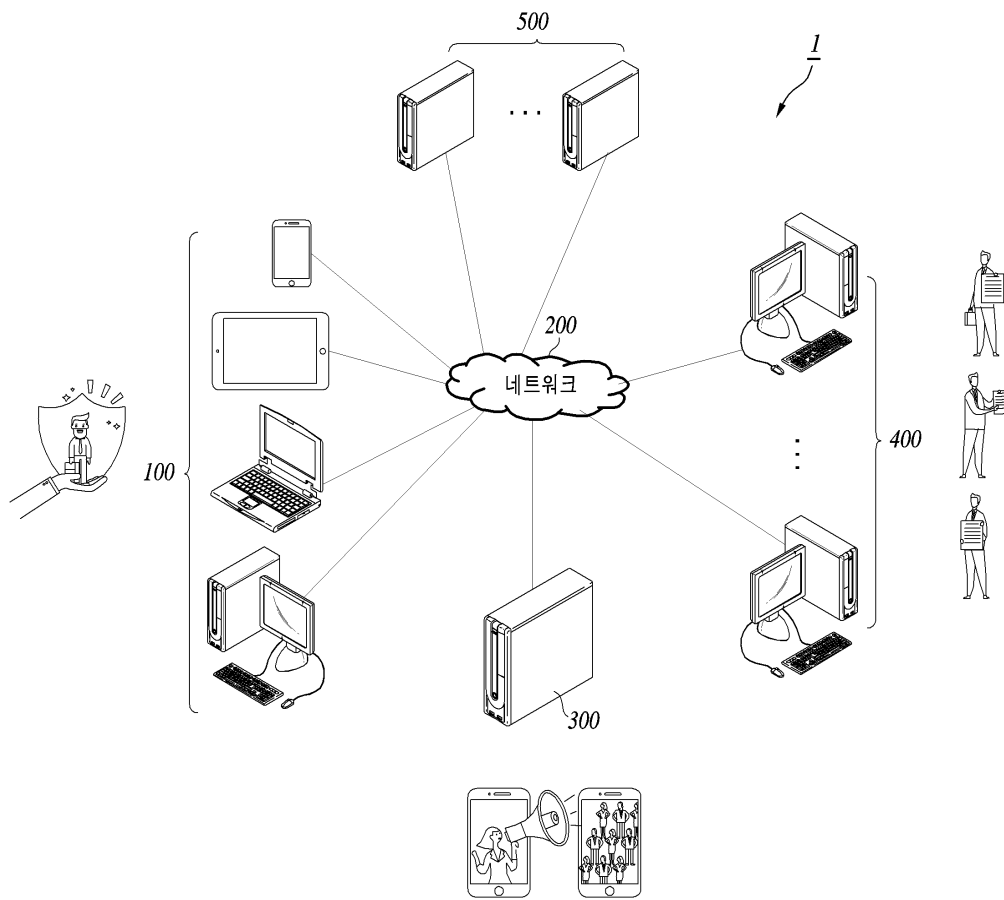
- [0042] 이하, 상술한 도 2의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의 구성에 따른 동작 과정을 도 3을 예로 들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실시예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 중 어느 하나일 뿐,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 [0043] 도 3a를 참조하면, (a)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적어도 하나의 자격자 단말(400)로부터 자격증 및 본인인증을 수행하도록 하고, 적어도 하나의 협회 서버(500) 등의 정보와 상호참조함으로써 진위여부를 판정하고, 진정한 자격증의 소지자만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랫폼에 등록되도록 한다. 그리고, (b) 의뢰인 단말(100)로부터 업무 특성(형사), 업무 내용(폭행죄 고소 등)이 업로드되는 경우,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중개 수수료를 결제받고 해당 업무 내용 및 업무 특성을 가진 업무를 처리할 자격증 소지자를 검색한다. 또한, (c)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의뢰인 단말(100)에서 어느 하나 또는 복수의 자격자를 선택한 경우(예비 포함), 선택된 자격자의 자격자 단말(400)로 이를 전송하여 수입수수료 및 수입조건 데이터를 업로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d)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의뢰인 단말(100)에서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계약체결을 통지하고 업무가 종료된 후 양 당사자로부터 리뷰 및 평점을 피드백받는다.
- [0044] 도 3b에서는, 사용자(End User) 측면에서 진행 순서를 설명한다. 따라서, 단말은 배제하고, 사용자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순번을 매겨 설명을 하도록 하나, 상술한 바와 같이 하드웨어 및 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행됨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하에서 사람을 주체로 설명을 했다고 하여 이는 곧 특허법 제2조위반제29조본문위반의 비발명 및 발명의 성립성 위반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때, 사용자는 양당사자를 가정하는데, 한 당사자(수입인)는 법무사로, 그 상대방은 위임인인 의뢰인을 가정한다. 물론, 상술한 위임관계 이외에도 사무관리나 도급 등 법정 및 약정계약에서 발생하는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하에서 중개 플랫폼이란 상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와 동일한 것으로 정의한다.
- [0045] ① (STEP 1) 중개플랫폼 가입
- [0046] - 법무사에게 위임할 업무가 있는 의뢰인은 중개플랫폼에 가입하여 본인확인 및 신청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승인을 받음 (수입인도 동일)
- [0047] ② (STEP 2) 의뢰인(위임인)의 위임업무(등기 등) 등록
- [0048] - 여러 개의 업무수입인 그룹에서 ‘법무사’를 선택한 후 업무내용 및 지역, 특이사항을 등록 후 저장
- [0049] - 등록시점에 등록비용(위임중개수수료와 등록보증금)을 사전 결제해야하며, 등록보증금은 추후 위임업무 종결시에 전액환불
- [0050] - 위임업무 등록 시에는 업무내용과 지역, 특이사항만 조회가 가능하기때문에 수입인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
- [0051] ③ (STEP 3) 수입인(법무사)의 업무수입 신청
- [0052] - 수입인은 위임업무 리스트를 조회하여 참여가능 (신청기한 1주일)
- [0053] - 법무사 수입인 그룹에게는 ‘법무사’ 위임업무만 조회 가능 * 자격자별로 해당 수입인그룹의 업무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0054] - 위임자의 개인신상정보는 화면에서 조회 불가(블라인드)
- [0055] - 업무수입 신청시점에 수입중개수수료 사전 결제
- [0056] ④ (STEP 4) 의뢰인(위임인)이 가격견적 등을 비교하여 수입법무사를 선정
- [0057] - 수입희망자별 가격견적(㉠기본수수료, ㉡누진료, ㉢원인증서 작성, ㉣등록비용, ㉤일당, ㉥교통비, ㉦제증명 발급, ㉧기타비용), 업무범위를 등록
- [0058] - 수입인의 개인신상정보는 화면에서 조회 불가(블라인드)
- [0059] - 위임인은 1순위 대상자와 2순위 대상자(예비)를 순서대로 선정

- [0060] ⑤ (STEP 5) 계약체결
- [0061] - 1순위 대상자가 수임승낙을 하거나 2순위 대상자의 수임거절 후 2순위
- [0062] 대상자가 수임승낙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가능
- [0063] - 수임승낙이 있게 되면, 비로소 블라인드 되었던 양측 당사자의 정보가
- [0064] 오픈되고, 계약서 양식으로 화면에 나타남
- [0065] - 화면에 의뢰인(위임인)의 확인서명(인증)이 있을 경우 계약은 자동체결
- [0066] ⑥ (STEP 6) 수임인 통지 및 업무위임
- [0067] - 수임인 통지 및 위임장 제공
- [0068] - 위임서류 제공 및 업무진행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0069] ⑦ (STEP 7) 위임업무 종결등록 및 등록보증금 환불
- [0070] - 위임인이 위임업무 종결을 통보하면 등록보증금을 지정계좌로 환불
- [0071] * 위임업무 종결 시에는 수임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평판도 등급 부여 (평판등급에 따라 다이아몬드/골드/실버/브론즈로 분류하여 연회비 차등화)
- [0072] ⑧ (STEP 8) 평판도 및 포인트 적립
- [0073] - 위임인의 평가에 따라 수임인의 평판도 계산/적립
- [0074] - 위임인이 이용후기를 등록하는 경우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이후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적립 가능(일정점수 이상의 포인트는결제에 차감사용 가능) * 결제방법 : 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환불은 등록계좌 무통장 입금)
- [0075] 이와 같은 도 2 및 도 3의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은 앞서 도 1을 통해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하여 설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설명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유추 가능하므로 이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 [0076]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포함된 각 구성들 상호 간에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도 4를 통해 각 구성들 상호간에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의 일 예를 설명할 것이나, 이와 같은 실시예로 본원이 한정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설명한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도 4에 도시된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 [0077] 도 4를 참조하면,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자격자 단말(400)로부터 등록을 받고(S4100), 협회 서버(500)를 통하여 자격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S4200), 확인이 완료된 자격자를 등록한다(S4300). 그리고,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업무 특성과 자격증을 매핑하여 저장하고, 의뢰인 단말(100)로부터 업무 특성 및 업무 내용이 수신되고(S4500), 중개 수수료가 결제된 경우(S4600), 업무 특성에 기반하여 이에 대응하는 자격증을 추출하고(S4610), 업무 내용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이와 기 설정된 유사도를 가지는 태그를 등록한 자격자 단말(400)을 추출하여(S4630), 업무 내용을 전송한다(S4650).
- [0078] 그리고,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자격자 단말(400)로부터 수임수수료 및 수임조건이 수신되는 경우(S4700), 이를 의뢰인 단말(100)로 전송하고(S4710) 의뢰인 단말(100)에서 수임인이 선택되는 경우(S4800), 선택된 자격자인 자격자 단말(400)과 의뢰인 단말(100)로 계약 체결에 대한 통지를 수행한다(S4810).
- [0079] 그리고, 사건 종료 기간이 경과한 경우,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의뢰인 단말(100)과 자격자 단말(400)로 리뷰를 요청하고(S4910), 등록을 받으면 상호간에 데이터를 누적시키도록 리뷰를 업데이트한다(S4920).
- [0080] 상술한 단계들(S4100~S4920)간의 순서는 예시일 뿐,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상술한 단계들(S4100~S4920)간의 순서는 상호 변동될 수 있으며, 이중 일부 단계들은 동시에 실행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다.
- [0081] 이와 같은 도 4의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은 앞서 도 1 내지 도 3을 통해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하여 설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설명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유추 가능하므로 이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 [0082]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는, 의뢰인 단말의 의뢰 데이터를 등록받아 업무 특성에 따라 의뢰 데이터를 분류 및 업로드하고(S5100), 업무 특성에 기 매핑되어 저장된 자격증의 종류를 등록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을 추출한다(S5200).
- [0083] 또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는, 추출된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로 의뢰 데이터를 전송하고(S5300), 적어도 하나의 자격증 단말로부터 수입수수료 및 수입조건 데이터를 등록받아 리스트업된 데이터를 의뢰인 단말로 전송한다(S5400).
- [0084] 그리고,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서버는, 의뢰인 단말에서 수임인인 자격자 단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된 자격자 단말로 수임인 선정 통지를 전송하고(S5500), 의뢰인 단말에서 수입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계약체결을 확정하고 의뢰인 단말 및 선정된 자격자 단말로 전송한다(S5600).
- [0085] 이와 같은 도 5의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은 앞서 도 1 내지 도 4를 통해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하여 설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설명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유추 가능하므로 이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 [0086] 도 5를 통해 설명된 일 실시예에 따른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가능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기록 매체의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가용 매체일 수 있고,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 [0087]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는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플랫폼이나 운영체제 등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음)에 의해 실행될 수 있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서버, 애플리케이션 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웹 서버 등의 애플리케이션 제공 서버를 통해 마스터 단말기에 직접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즉,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임인 및 수임인을 위한 업무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거나 사용자에게 의해 직접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즉,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단말기에 등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 [0088] 전술한 본 발명의 설명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단일형으로 설명되어 있는 각 구성 요소는 분산되어 실시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분산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도 결합된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 [0089]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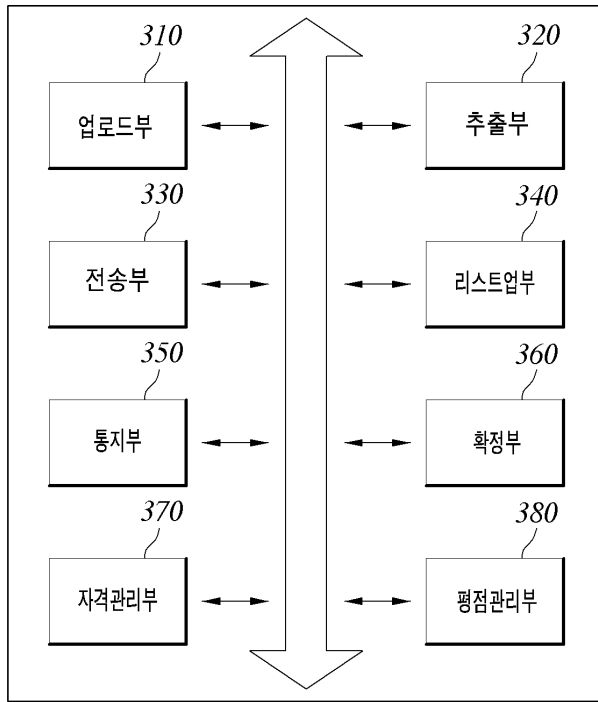
도면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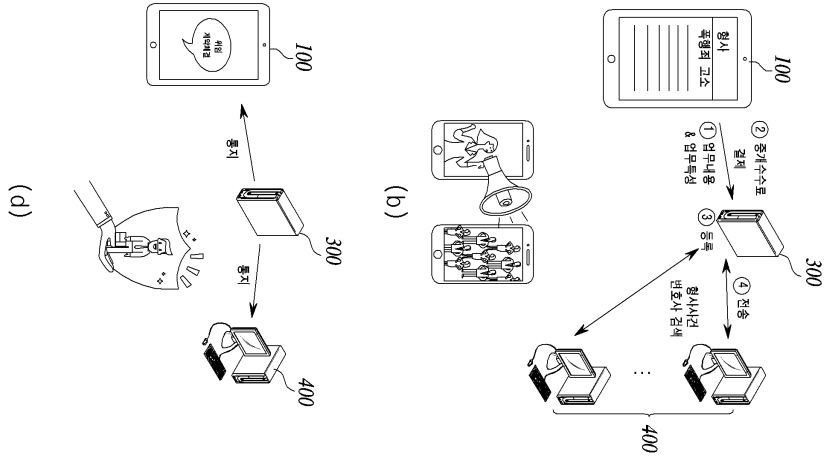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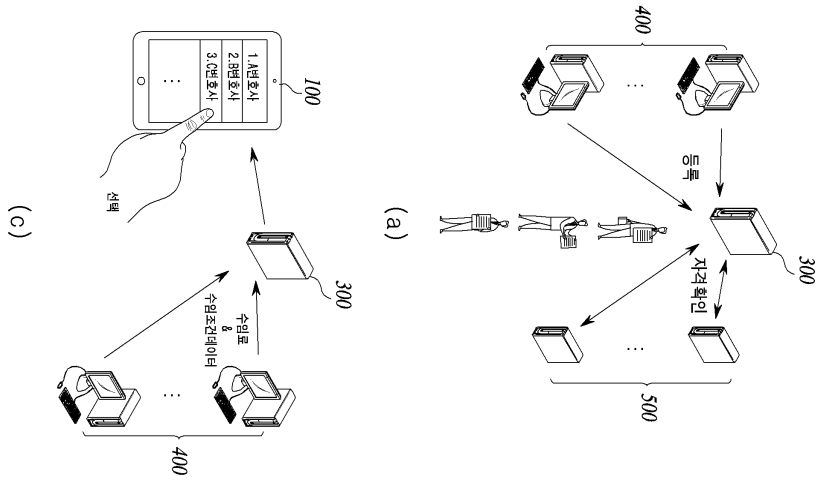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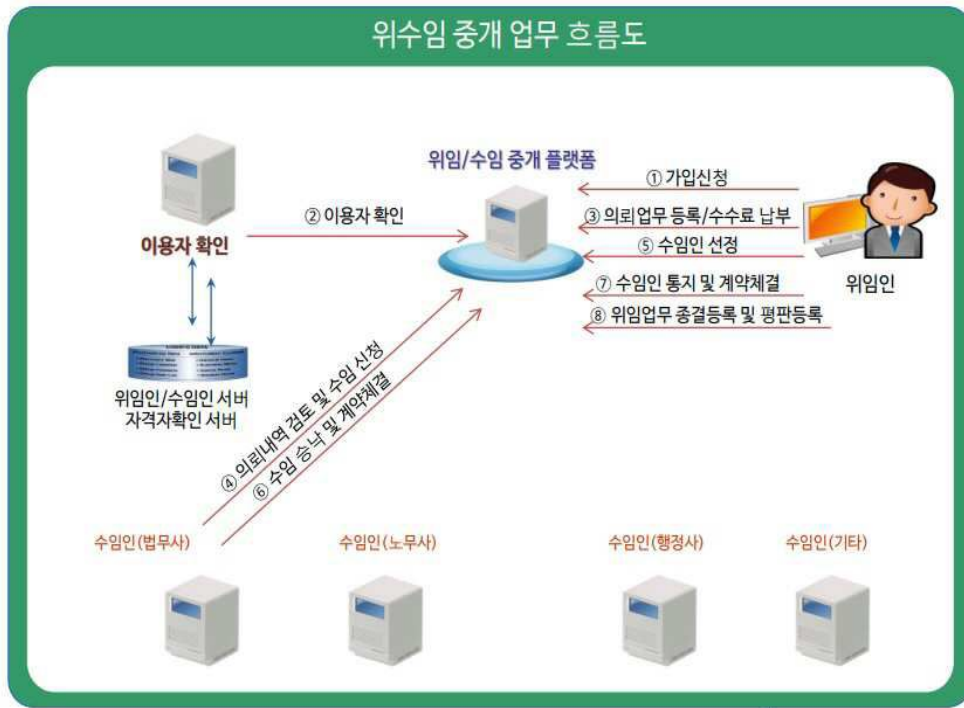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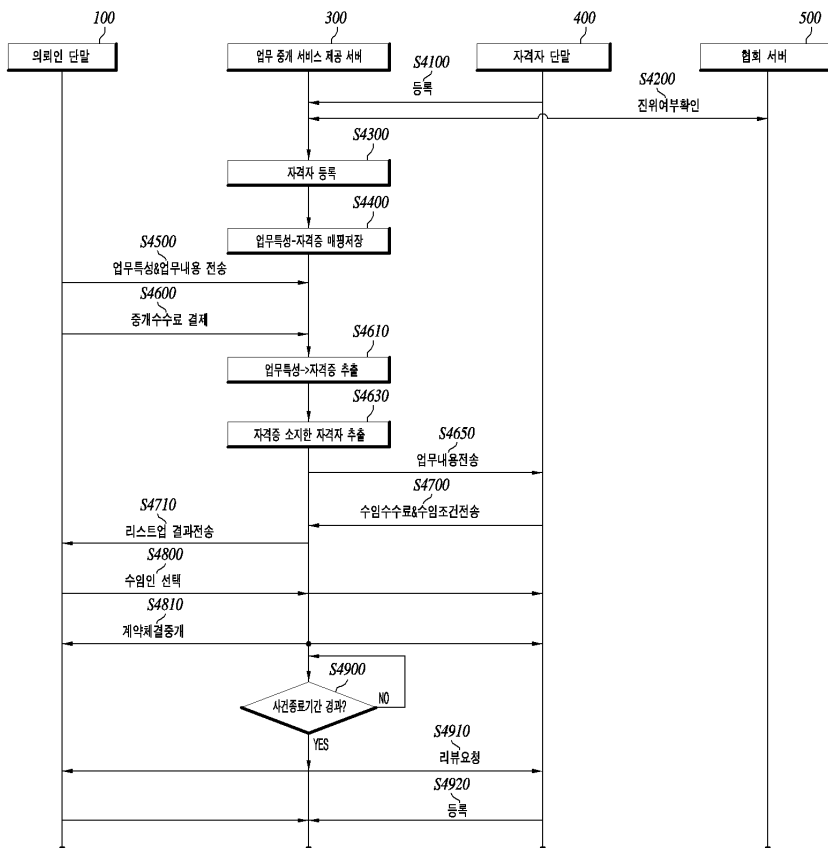
도면3a



도면3b



도면4



도면5

